

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노원구청장(장애인지원과장)
(경유)

제 목 사회복지법인 '베데스다' 정관변경인가 통보

1. 노원구 장애인지원과-8283(2012. 5.2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「베데스다」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, 붙임 정관변경 인가서의 내용과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하오니 법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고, 법인의 지도,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「베데스다」
- 나. 대 표 자 : 양 동 춘
- 다. 소 재 지 :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
- 라. 정관변경 인가내용

변 경 전	변 경 후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(지부)를 둔다 1. 인천베데스다 : 인천광역시 부평구 _____ _____

붙임 : 정관변경 인가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주무관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과장

협조자

시행 장애인복지과-12248 () 접수 ()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소문별관 2동 1층 / http://disability.seoul.go.kr/
전화 3707-8481 /전송 3707-8368 / hj0327@seoul.go.kr / 비공개(6,7)